

인천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가합1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목지선, 정다운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광미

변론 종결 2021. 4. 30.

판결 선고 2021. 5.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35,412,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 1) 원고는 용역 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2) C은 2007. 4. 25.부터 2016. 8. 22.까지 원고에서 근무하면서 입출금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C의 시모(媼母)이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 1) 원고는 2016. 8. 26. 'C이 원고의 근로자가 아닌 피고, 배우자 D 등 가족 명의의 계좌로 급여 명목의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고소하였다.
- 2) C은 2016. 12.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7. 3. 30.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6고합808호), 위 판결은 2017. 4. 7.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횡령행위'라 한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C은 2009. 2. 10. 인천 부평구 E 소재 원고 사무실에서 피고가 마치 원고의 피고용인으로 서 인건비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급여이체 목록에 피고의 성명, 계좌번호, 급여총액을 기재한 허위 급여이체 목록을 원고의 주거래 금융기관에 전달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피고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 G)로 4회에 걸쳐 합계액 3,490,7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다시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C은 위 일시경부터 2016. 8. 10.경까지 총 804회에 걸쳐 원고의 자금을 위

피고, D,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251,467,270원을 횡령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자금을 횡령함에 있어, 2009. 12. 10.경부터 2016. 8. 10.경 까지 총 703회에 걸쳐 C이 관리·사용하는 피고, D 명의 차명 계좌로 합계 1,143,587,810원을 송금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C이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합계 435,412,750원이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4) 한편, 원고와 C은 2016. 12. 14.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C은 원고에게 합의금 7억 5천만 원을 변제하되, 1억 3천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6억 2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2017. 3. 31.까지 지급하며, 나머지 6억 원은 2016년 12월부터 매월 30일에 250만 원씩 분할변제하고,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는바, 원고는 같은 날 C으로부터 130,000,000원을 지급받고 C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C에게 자기 명의의 계좌를 양도하거나 혹은 자기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수 있도록 허락하여 C의 이 사건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는바, C이 사용한 피고 명의의 계좌가 3개이고, 이 사건 횡령행위가 약 7년 동안에 걸쳐 이루어진 점, 본래 소득이 많지 않았던 C이 피고에게 주기적으로 돈을 송금한데다가 경제적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횡령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35,412,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C은 횡령금 중 일부를 이 사건 횡령행위에 직접 사용한 계좌로부터 피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는데, 위 이체된 금원은 용돈 내지 생활비 명목으로 보여그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피고인데다가, 피고는 위 이체된 금원이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이체된 금원상당액인 64,233,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 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등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의 이 사건 횡령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자기 명의의 계좌가 이 사건

횡령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였으면서도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와 C은 고부지간(姑婦之間)이어서 피고가 C에게 자기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 자체가 지나치게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용을 허락한 데에 대한 대가나 직접적인 이익을 받았다는 등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려운바, C이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가 C의 불법행위를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더 나아가 이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C이 이 사건 횡령행위에 사용한 피고 명의의 계좌가 모두 3개이기는 하지만, 그 중 2개1)는 각 한 차례씩 이용된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1개2)를 전적으로 사용, 관리하면서 이 사건 횡령행위에 직접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이 사건 횡령행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횡령행위에 자기 명의의 계좌가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③ C은 범죄수익 중 일부 금액만을 피고를 위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C과 피고 사이의 관계, 피고의 나이, 피고가 원고와 C 사이의 관계와 C의 지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입장에서 C이 계속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④ 피고가 2010. 3. 26. 인천 부평구 H아파트 1호에 관하여 2010. 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고, 그 거래가액이 305,000,000원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같은 날 채권최고액 21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J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26,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K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는바,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금을 통하여 조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달리 매수자금의 출처가 이 사건 횡령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만을 근거로 피고가 C의 이 사건 횡령행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인천 부평구 L 외 2필지 M아파트 제15층 N호에 관하여 2017. 3. 2. 피고 명의로 2016. 1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이는 C의 이 사건 횡령행위가 발각되어 이미

종료된 이후 발생한 사후적인 사정인바, 위 아파트를 매수한 자금의 출처가 이 사건 횡령행위로 인한 피해금이라거나, 나아가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범죄수익의 은닉에 가담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이러한 사후적인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C의 이 사건 횡령행위를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자기 명의의 계좌를 C에게 이용하도록 허락하였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등참조). 한편,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횡령한 돈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등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횡령행위를 통하여 얻은 범죄수익 중 일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일자	금액	일자	금액
2009. 03. 10.	1,000,000원	2009. 05. 15.	700,000원
2009. 08. 10.	1,500,000원	2009. 09. 10.	1,000,000원
2009. 10. 12.	1,510,000원	2009. 11. 10.	1,620,400원
2009. 12. 10.	1,700,400원	2010. 01. 11.	1,500,400원
2010. 02. 10.	1,600,400원	2010. 03. 10.	1,600,400원
2010. 04. 12.	1,600,000원	2010. 11. 10.	2,500,000원
2011. 02. 10.	1,000,400원	2011. 03. 10.	3,000,400원
2011. 05. 11.	3,500,400원	2011. 06. 10.	3,000,000원
2011. 09. 09.	2,900,000원	2011. 10. 10.	3,000,000원
2011. 11. 10.	3,500,000원	2011. 12. 12.	3,500,000원
2012. 02. 10.	3,000,000원	2012. 03. 12.	2,500,000원
2012. 04. 10.	2,500,000원	2012. 05. 10.	1,000,000원
2012. 07. 10.	2,000,000원	2012. 08. 10.	2,000,000원
2012. 09. 10.	2,000,000원	2012. 10. 10.	2,000,000원
2012. 11. 12.	2,000,000원	2013. 01. 10.	1,000,000원
2013. 05. 10.	500,000원	2014. 04. 11.	2,500,000원

나) 살피건대, 피고가 C으로부터 약 5년 동안 합계 64,233,200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지급기간, 지급횟수 및 시간적 간격, 평균적인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C이 부양의무자로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가 위 돈의 출처가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앞서 3.의 가.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의 이 사건 횡령행위를 알았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김지후, 판사 심웅비, 판사 김준영

